

## 울산광역시 중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명녀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67
----------	------

발의연월일 : 2021. 11. 9.

발 의 자 : 이명녀, 김지근, 노세영  
강혜경, 박경흠, 문희성  
신성봉, 권태호, 김기환,  
박채연, 안영호

### 1. 제정이유

울산광역시 중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미디어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여 민주적 의사소통과 공동체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계획의 수립(안 제3조 ~ 안 제4조)
- 다. 사업 및 지원(안 제5조)
- 라. 심의·자문기관(안 제6조)
- 마. 공공시설 활용 및 우수콘텐츠의 활용(안 제7조 ~ 안 제8조)
- 바.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9조)

### 3.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9조

### 4.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 울산광역시 중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미디어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여 민주적 의사소통과 공동체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공동체미디어”란 마을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과 미디어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활용하는 온·오프라인상의 영상·음성·인쇄 매체 등의 콘텐츠를 말한다.
2.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이란 주민참여를 통한 마을공동체미디어 관련 교육, 제작 및 운영, 비영리 목적의 마을공동체미디어 유통 및 보급 등의 활동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단체”란 마을공동체미디어를 운영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의 활성화와 공익성이 인정되는 마을공동체미디어의 확산·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 지원 및 협력 방안

3. 마을공동체미디어 유관기관과의 연계지원 방안

4. 그 밖에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

2. 마을공동체미디어 관련 교육, 홍보, 연구, 조사 사업

3. 마을공동체미디어 유통 및 보급 등 지원 사업

4. 그 밖에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심의·자문기관) 구청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마을공동체 위원회에 심의·자문을 구할 수 있다.

1.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2.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3. 마을공동체미디어 관련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7조(공공시설 활용) 구청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단체가 울산광역시 중구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12 (제240회-행정자치위제9차부록)

제8조(우수콘텐츠의 활용) 구청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단체가 생산하는 콘텐츠를 공공기관 또는 공공시설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근 거 법 규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4. 6., 2007. 5. 17., 2009. 12. 29., 2011. 7. 14., 2017. 4. 18., 2018. 12. 24.>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 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
  - 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
  -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소류지(小溜池)·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개수(改修)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파.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등록·보존 및 관리
  -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